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4-49호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사무를 추가, 변경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 행정지원실, 홍보담당관 추가 및 행정문화국->관광문화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라목에 있던 ‘행정문화국’을 바목 ‘관광문화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신설하며, 기존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사목과 아목으로 한다.

라. 행정지원실

마. 홍보담당관

바. 관광문화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생략) 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 다. (생략) <u><신설></u> <u><신설></u> <u>라. 행정문화국</u> <u>마. · 바.</u> (생략) 2. (생략) ③ (생략)	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행정지원실</u> <u>마. 홍보담당관</u> <u>바. 관광문화국</u> <u>사. · 아.</u> (현행 마목 및 바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종규 의원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